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4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최혁진 · 이성윤 · 손솔
민형배 · 정혜경 · 김우영
윤종오 · 박지원 · 김재원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별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 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 징계절차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이관하여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다.

제3조(종전 징계처분의 효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